

2021학년도 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 학사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2021. 2. 23 (화) 10:00
- 장 소 : 실시간 온라인 Zoom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00. 한양	
01. 의과대학	3
01-1 의과대학 조직구성	4
01-2 의과대학 보직자 소개	5
01-3 의과대학 행정팀 전화번호 및 업무시간	5
02. 의과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 안내	6
02-1. 학칙	6
02-2. 학칙시행세칙 Ⅱ (의과대학에 관한 학칙)	14
03. 의예과 학사 안내	18
03-1 의예과 수료 요건	18
03-2 의예과 2020-2023 교육과정	19
03-3 의예과 2021학년도 1-1 수업시간표	20
03-4 수강신청 안내	21
04. 기타 안내	23
04-1 2021학년도 학사일정표	23
04-2 신입생 학생증 신청 안내	24
04-3 신입생 교과서 구입 안내	25
04-4 의과대학 홈페이지 안내	26

한양의 상징

남색 Pantone 541C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의 하나인 남색, 절대적으로서의 푸름은 이성이며, 희망이며, 나아가 평화를 자각하게 한다. 청운의 꿈을 실현하라는 파란 하늘처럼 이성과 단련과 찬란한 의지를 간직하는 한양의 교색(敎色)이다.

개나리

개나리는 살 수 있는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 모래땅이든, 습지든, 기름진 땅이든 관여하지 않는다.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 만족하고 적응하는 무서운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 개나리는 사랑의 실천을 피우는 꽃이 된다. 근면, 정직, 겸손, 봉사하려는 꽃, 이러한 네 덕목의 꽃이 개나리인 것이다.

사자

왕도를 실천하는 사자. 강건하고 의젓하며 용기가 있다. 사자는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강자라고 하여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밀림을 포효하는 사자처럼 삶의 지혜를 개척하며 완성하려는 지혜와 용기를 젊은 한양인은 간직하려고 한다. 여기서 젊은 한양인을 행당의 사자라고 부른다.

비둘기

비둘기는 사랑의 질서를 아는 새이다. 반드시 한 쌍이 되어 삶을 이루며 평화를 인간에게 가르쳐 준다. 비둘기는 한양의 깨끗한 품위를 상징하며 더 높고 더 넓은 해원을 향하여 날아가는 비둘기의 모습처럼 사랑의 질서를 구현하려고 비둘기를 교조(敎鳥)로 삼았다.

UI



심볼마크 3D



심볼마크 단도



이니셜 로고

한양대학교 심볼마크는 University Identity System의 기본 요소로서 한양대학교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되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이니셜 로고는 한양대학교의 전통과 비전을 나타내는 Basic UI와 차별되는 친근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로서 주로 학생들이 프로모션 아이템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대내적인 학교축제 및 각종행사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캐릭터 마크



캐릭터(HYion)



한양대학교의 캐릭터 마크는 한양대학교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되는 하나의 상징이다. 특히 학교의 전통성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이미지 캐릭터로 활용되어 주로 한양대학교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배너, 현수막, 학생용품, 기념품에 사용한다.

한양대학교의 사자 캐릭터는 한양대학교의 차별화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새로운 한양의 마스코트다.

대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활용되며 학생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학교의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다. 기본형은 정면과 측면, 후면으로 되어 있으며, 응용형은 현재 5가지의 표정과 자세로 상황별로 변화를 주어 개발된 상태로 니즈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사랑의 실천

교육이념

한양대학교는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덕목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교육이념으로 삼는다.

교육목적

한양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본교의 교육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 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근면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교양인을 기른다.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고도의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을 기른다.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사회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인을 기른다.
문화적 다원성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인을 기른다.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봉사인을 기른다.

교가

김연준 작사·작곡

원 비 의 높 고 도 굳 은 뜻 으 로
한 가 램 의 밝 고 도 깊 은 밤 으 로
우 리 는 배 우 리 쉬 임 이 없 이
참 되 고 착 하 고 고 이 사 는 길
배 워 서 조 국 의 빛 을 더 하 리
한 양 한 양 무 - 궁 하 도 록
삼 천 리 강 산 에 빛 을 더 하 리

0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 사명

사랑의 실천으로 교육, 연구,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인류 건강에 기여한다.

2. 비전·슬로건

- 비 전 : 2028년 세계 100위권 내 의과대학 진입
- 슬로건 : 사랑의 실천 50년 미래를 선도할 100년

3. 교육목적

능동적으로 자기개발을 추구하면서 창의적인 연구로 의학전문지식을 실용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4. 의학과 교육목표

-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인성을 갖춘 **실천적 의료인**을 기른다.
-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학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실용적 의료인**을 양성한다.
- 자기 주도적인 학습방법을 통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능동적 의료인**을 양성한다.
- 미래 의학자에 적합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의료인**을 육성한다.

5. 의학과 졸업역량

- | | | | |
|----------|-----------|------------|------------|
| 1) 진료 능력 | 2) 의사소통 | 3) 인문학적 소양 | 4) 전문직업성 |
| 5) 윤리성 | 6) 자기주도학습 | 7) 의학적인 지식 | 8) 과학적인 사고 |

6. 의예과 교육목표

한양의대 의예과는 미래 인재로서 건전한 시민 소양의 습득과 의과대학생으로서 정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의예과 교육과정을 통해 다음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건전한 시민 소양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 능력을 갖춘다.
-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다.
- 능동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
- 의학에 필수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실천할 수 있다.

01-1. 의과대학 조직구성



01-2. 의과대학 보직자 소개

보직명	학과/부(전공)	직위	성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내과학교실	교수	최호순
의과대학장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한중수
교무부학장	가정의학교실	교수	박훈기
연구부학장	약리학교실	교수	고현철
학생부학장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박기철
대외협력부학장	재활의학교실	교수	박시복
의학과장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최중섭
의예과장 겸 기초교육과장	해부.세포생물학교실	교수	윤지희
임상교육과장 (서울)	비뇨기과학교실	교수	박성열
임상교육과장 (구리)	피부과학교실	교수	김정수
MESH센터장	응급의학교실	교수	임태호
의학연구실장	내과학교실	교수	전대원
의학정보실장	병리학교실	교수	정희경
의과대학 RC 행정팀장	의과대학 RC 행정팀	선임부장	장인숙

01-3. 의과대학 행정팀 전화번호 및 업무시간

위치	전화번호	업무시간
제1의학관 3층	2220-0676 (의예과) / 0395,1841(의학과) 2220-1842 (장학, 학생) 2220-1842 (장소대관)	- 요일 : 월 ~ 금 - 시간 : 08:30 ~ 17:30 ※ 방학 중에는 단축근무로 업무시간 변경됨

02. 의과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 안내

02-1.학칙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② 제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09.2.21., 개정 2015.2.24.>
- ③ 법정공휴일 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등에 의한 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소속대학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4.>
- ④ 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학과, 학년,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점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이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제9조(정기휴업)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 2009.2.21)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개교기념일
5. 국정공휴일

제10조(임시휴업)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9.2.21)

제9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 ①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은 질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휴학이 가능한 사유와 절차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7.30., 2017.11.30.>
- ②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 1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와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은 재학 중 학칙 시행세칙(1)에서 지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개정 2018.6.14., 2018.12.7.>

제25조(휴학기간)

-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학 중 전체 휴학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을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11.4]

제26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2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08.7.19., 2017.11.30.>
1. 휴학기간 경과후 소정 기한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2. 매학기 소정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이중등록한 자 <개정 2017.11.30.>
 6. 삭제
 7. 삭제
 8.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9. 학칙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5.4.30.>
- ②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와 스마트융합공학부는 전항 각호의 사유 이외에 성적으로 인한 제적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5.3., 2018.12.7.>

제10장 교과목 이수 및 제재

제30조(교과목 이수)

-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5.2.24.>
- ② 1학점은 15시간 이상의 수업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4., 2017.11.30.>

제33조(이수학점)

- ① 학생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20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와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2.23., 2017.2.14., 2018.12.7.>
- ⑤ 6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은 학부·대학원 공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나, 졸업 전까지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21., 2015.2.24., 2016.2.24., 2018.12.7.>

제35조(출석)

- ① 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11.4.>

<출석인정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제4조(출석인정 절차)

-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시행세칙 인정근거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병역판정검사 (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1호
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3호
입원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최대 4주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병가휴학 실시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3조 2항 1호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 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23조 2항 2호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3호
가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한 달에 1회만 가능, 1회당 1일만 신청 가능	없음	23조 2항 3호
나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23조 2항 3호
다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23조 2항 3호
라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기업체 상근직과 채용전환형 인 턴까지 포함)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23조 2항 3호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3호

제5조(기타사항)

-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9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5조(기타사항) 1항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교과목 이수 인정 및 평점)

- ① 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60점 이상의 성적으로 한다. 다만,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② 교과목 이수의 평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유급)

유급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2)

1. 자진유급은 스스로 이미 취득한 성적을 포기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무효로 하는 경우
2. 강제유급은 이미 취득한 성적을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강제로 포기하게 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무효로

하는 경우

제44조 (수료 인정학점) 학년별 수료인정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졸업 학점	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고
77	38이상	77이상			의예과
160	40이상	80이상	120이상	160이상	의학과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에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은 소속대학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소속대학장의 징계제청에 의해 다음 각호의 징계를 결정한다.(개정 2008.7.19)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제51조의2(세부규정)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7.19)

【학칙시행세칙(1)】

제8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20학점이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학기의 최소 수강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삭제 <2016.2.24.>

③ 삭제 <2016.2.24.>

④ 학군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군사학1, 군사학2, 군사학3, 군사학4 교과목과 사회봉사, 커리어개발 I, 커리어개발 II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위 제1항의 기준에서 최대 2학점까지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09.2.21., 개정 2009.9.23., 2011.5.12., 2012.6.27., 2015.2.24., 2016.2.24., 2018.2.27.>

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평점평균은 0.00으로 하고 학사경고 처리한다. <개정 2009.2.21.>

⑥ 성적을 Pass(P) 또는 Fail(F)로 부여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 서울캠퍼스 학생은 교양필수 교과목, 연구실현장실습, 한양사회봉사, 사회봉사, 공과대학의 실용공학연구, 의학과의 종합선택실습1, 종합선택실습2, 종합선택실습3, 교육봉사활동1, 교육봉사활동2를 제외하고 한 학기에 1과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ERICA 캠퍼스 학생은 사회봉사와 교양필수 교과목을 제외하고 한 학기에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2.12., 개정 2009. 2.21., 2010.7.30., 2012.5.7., 2015.12.21., 2018.12.7., 2019.11.29.>

⑦ 삭제 <2016.2.24.>

⑧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22학점 이하 수강을,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23학점 이하 수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개정 2016.2.24., 2018.12.7.>

⑨ 부전공 및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제1전공 학과의 교육과정에 없는 타 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서 최대 3학점까지 초과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 휴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기간내에 신청하고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이 질병으로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와 4주 이상의 진단서(종합병원 발행)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휴학 또는 휴학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1.4., 2017.11.30., 2018.6.14.>

1.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5급공채시험(행정직, 외무직, 기술직),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준비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 1년 이내의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 1호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연수원에 재직하는 동안 휴학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3.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휴학하고자하는 여학생의 경우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에 대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4.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창업휴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4.>

5. 서울캠퍼스 학생으로서 장기인턴십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6. 기타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로 하며 총 1년 이내에서의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6.11.4., 2017.11.30.>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 만료자의 휴학 연장은 소속 대학장의 결정에 따라 잔여기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6.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학생은 재학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으며,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은 재학 중 질병이나 입대, 임신 및 출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18.6.14., 개정 2018.12.7.>

[전문개정 2014.4.2.]

제13조(입대휴학)

①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대일의 해당 학기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대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4.>

1. 입대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입대영장 또는 복무확인서(시, 군, 읍, 면장 또는 소속 부대장 발행)

② 입대 휴학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사유로 조기 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 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교하여야 한다.

④ 입대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대학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일반휴학자의 입대휴학 수속)

전 제12조에 의하여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 관계로 인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전에 일반-입대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 입대영장 혹은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제 13조에 의한 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15조(복학)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학기 개강전 복학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대휴학자의 경우에는 복학원서(본교 소정양식), 병적확인서 또는 제대증 사본(제대자의 경우)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16조(특별휴학)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휴학을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2., 2017.2.14.>

1.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여야 할 학생의 필수과목이 당해 학기에는 개설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에만 개설되는 때에는 당해 학기초에 6개월간의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2.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 유급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동안 휴학을 실시한다. 다만, 의과대학과 간호학부의 강제유급은 제외한다.
3. 유기정학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징계 종료 학기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7.>

제17조(결시의 경우 성적처리)

① 병역,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개시 전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종료 직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개정 2017.11.30.>
2.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② 시험결시를 승인받은 학생은 담당 교강사에게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교강사는 기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어 해당학기가 끝나기 전에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19조(학기 개시일부터 7주 후 기말 시험전 입대휴학자의 성적)

학기 개시일부터 7주 후 학기말 시험전에 입대휴학한 자에 한하여는 해당학기 휴학일자 이전의 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 3 장 징 계

제5조(징계의 구분)

①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근신은 7일 이상 1월 미만 <개정 2015.11.2.>
2. 유기정학은 1월 이상 3월 이하
3. 무기정학은 3월 초과
4. 퇴학은 학칙 제28조 1항에 의한 제적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과 구별되는 봉사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봉사명령은 징계처분과 병과하지 않는다.

제6조(징계의 대상)

- ① 징계는 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영어인증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료 후의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물에 관해 표절행위를 한 자
 4.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시설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점거한 자
 6. 학교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반출한 자
 7. 학내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 사용, 무단 유출, 파괴,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한 자
 8. 본교 인터넷 게시판 운영규정을 위반한 자.
 9. 광고 및 인쇄물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10. 교직원에게 폭행, 폭언한 자
 11. 학내에서 절도, 폭력, 폭언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12. 기타 학칙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제7조(징계위원회)

- ①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원) 전임교원 및 학생부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
- ②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8조(징계의 발의)

- ① 제6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 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대학(원)장은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 진술서 1부(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3.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 의견서 1부
- ② 학생처장은 소속대학(원)장이 전항에 의한 징계발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대학(원)장에게 징계발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절차)

-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징계발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징계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퇴학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8.4.>
- ④ 삭제 <2008.8.4.>

제10조(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 ① 징계대상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본인에게 출석예정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5.11.2.>

제11조(징계처분의 효력)

- ① 근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업과 시험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 ②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③ 징계처분의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 ④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⑤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⑥징계처분의 효력은 휴학, 방학 등의 사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2조(징계의 해제)

- 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으로부터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 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되면 소속대학(원)장은 위원회에 징계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생처장은 위원회의 징계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한다.

제13조(징계의 통보)

- ① 학생처장은 징계처분 및 징계해제 결과를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대학(원)장, 교무처장,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계처분의 효력은 징계처분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제14조(재심청구권)

- ①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대학(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 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당초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15조(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처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196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4.28 공포)(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4 공포)(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 공포)(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2-2. 학칙시행세칙II (*의과대학에 관한 학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87조에 의거하여 의과대학에 관한 학칙 시행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만을 따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2015.4.30.>

제2조(교과이수 기준)

- ① 삭제 <2010.7.30.>
- ② 삭제 <2015.4.30.>
- ③ 의예과 및 의학과 1, 2학년의 경우 해당 학기(이하 해당 학기), 의학과 3, 4학년의 경우 해당 학년(이하 해당 학년)에 수강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 2.00 이상인 자로서 1개의 전공과목이 과락인 경우 진급심사 전에 해당 교과목에 대한 특별시험을 학기 또는 학년 말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2012.12.24., 2015.4.30., 2019.11.29.>
- ④ 특별시험의 성적은 69점을 최고 점수로 한다.
- ⑤ 특별시험은 1, 2학기 통산 1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특별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30.>

제3조(평점평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시 교과목별 평점은 별표 1의 성적환산표에 따른다. <개정 2010.7.30., 2015.4.30.>
[(교과목별평점 x 학점)의 총합] ÷ 수강신청 총학점

제4조(의학과 진급)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시 의예과의 총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7.30.>

제5조(유급)

- ① 유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30.>
 1. 학기유급: 해당 학기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기를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제도(의예과 1학년과 2학년,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2. 학년 유급: 해당 학년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제도(의학과 3학년과 4학년)
- ②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학업성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급한다. <개정 2015.4.30.>
 1.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평점평균이 2.00미만 인자 <개정 2015.4.30.>
 2. 수강한 교과목 중 과락과목이 있는 자(다만, 전공 교과목만 해당) <개정 2015.4.30., 2016.2.24., 2020.11.2.>
 3. 졸업요건(의예과는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4.30., 개정 2019.11.29.>
- ③ 유급된 자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기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고 전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다만, 전공 교과목만 한함) <개정 2015.4.30., 2020.11.2.>
- ④ 삭제 <개정 2010.7.30.>

제6조

삭제 <2012.12.24.>

제7조(제적)

- ① 학칙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3회 강제유급시에는 제적한다.
- ② 동일학년 2회 강제유급시에는 제적한다.
- ③ 삭제 <2012.12.24.>
- ④ 재입학한 당해 학년도 강제유급시 재 제적한다. <신설 2014.1.8.>

제8조(재수강)

기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은 학수번호가 같거나 대치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

여 허용하며, 상위급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한다.

제9조(휴학)

휴학은 학칙시행세칙 I 제12조,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가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가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와 4주 이상의 진단서(상급 종합병원 발행)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제10조(졸업종합시험)

- ① 졸업논문에 갈음하여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하여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2.12.24., 2015.4.30.>
- ② 졸업종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자격을 인정한다.
- ③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졸업을 보류하며 다음 학년 1회에 한하여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재입학)

- ① 재입학은 의과대학 학사제적자로서, 해당학과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학칙 제51조 제2항의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30., 2019.5.16.>
- ②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학)

강제유급(학기유급)된 학생은 한 학기 동안 휴학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5.4.30.]

제13조(복학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 또는 학년 초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유급) 규정에 따라 유급된 경우 해당 학기 초에 복학하여야 하며 월반복학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4.30.]

제14조(제2전공 및 부전공)

- ① 타전공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의 의예과, 의학과 전공과정을 제2전공 및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없다.
- ②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은 제2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제2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

부칙

부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1975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1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1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7년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제1,2항의 제적을 위한 유급 횟수의 산정은 의학과 2002학번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25. 변경)

이 변경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의예과의 경우 제5조 유급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제1,2항의 제적대상자에 대한 유급 횟수의 산정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조 평점평균에 관한 사항은 2011학년도에는 1학년, 2012학년도부터는 1학년, 2학년 모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6.17.>

부칙(2012.1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제1항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유급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6.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2항 제2호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5.1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변경사항은 2020년 의예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의 신설 규정은 2018년 의학과 1학년부터 적용한다.

<학칙시행세칙 II 제3조> (별표1)

【성적환산표】

등 급	실 점	환 산		비 고
		평 점	점 수	
A ⁺	95이상	4.5	95	
		4.4	94	
		4.3	93	
		4.2	92	
		4.1	91	
		4.0	90	
B ⁺	85 ~ 89	3.9	89	

등급	실 점	환 산		비 고
		평 점	점 수	
		3.8	88	
		3.7	87	
		3.6	86	
		3.5	85	
B ⁰	80 ~ 84	3.4	84	
		3.3	83	
		3.2	82	
		3.1	81	
		3.0	80	
C ⁺	75 ~ 79	2.9	79	
		2.8	78	
		2.7	77	
		2.6	76	
		2.5	75	
C ⁰	70 ~ 74	2.4	74	
		2.3	73	
		2.2	72	
		2.1	71	
		2.0	70	
D ⁺	65 ~ 69	1.9	69	
		1.8	68	
		1.7	67	
		1.6	66	
		1.5	65	
D ⁰	60 ~ 64	1.4	64	
		1.3	63	
		1.2	62	
		1.1	61	
		1.0	60	
F	0 ~ 59			

03. 의예과 학사 안내

03-1. 의예과 수료요건 (77학점 이수와 누적평균평점 2.0이상)

학과	수료 학점	전공		교양			총합계	학생자율 학점
		기초(필수)	핵심	필수	핵심 (필수)	핵심 (선택)		
의예과	77	15	37	14	1	4	71	6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비고	수료필수 최소이수학점
교양 필수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1	1	3	14		14
	사랑의실천1(한양나눔)	1	1	2			
	말과글	1	1	3			
	커리어개발 I:취.창업로드맵	1	1	1			
	전문학술영어	2	1	3			
	글로벌리더십(HELP2)	2	2	2			
핵심 교양	교양선택과목				4		4
핵심 교양	사회봉사			1	1		1
전공 기초(필수)	사람.의료.사회1	1	1	2	15	8과목 필수 이수	전공기초 15
	일반생물학	1	1	3			
	의과학기초실습	1	2	1			
	문화와비평	1	2	2			
	유기화학	1	2	2			
	의학용어학1	1	2	2			
	인간심리학	1	2	2			
의과학기초연구	2	1	1				
전공 핵심(필수)	일반물리학	1	1	3	27	10과목 필수 이수	전공핵심 37
	일반화학	1	1	3			
	사람.의료.사회2	1	2	2			
	세포생물학	1	2	3			
	행동의학	2	1	2			
	통계학개론	2	1	3			
	사람.의료.사회4	2	2	2			
	의학생화학입문	2	2	3			
	의학생리학입문	2	2	3			
	유전학	2	2	3			
전공 핵심(선택)	사람.의료.사회3-1	2	1	2	2	1과목 이수 택필	
	사람.의료.사회3-2	2	1	2			
전공 핵심(선택)	생물리학	1	2	3	8	4과목 이상 이수	
	의료기기의 이해	1	2	2			
	인체영양학개론	1	2	2			
	의학용어학2	2	1	2			
	의약화학	2	1	2			
	임상정보시스템과 의료의 미래	2	1	2			
	죽은자의 이야기	2	1	2			
	기초신경과학	2	2	2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의학적 이해	2	2	2			
인구집단과 건강	2	2	2				

* 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77학점이나, 의예과는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03-2. 의예과 2020-2023 교육과정

학년	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강의	실습
1학년	1학기	GEN4091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교양필수	3	3	0
		CUL0005	말과글	교양필수	3	3	0
		SYH0001	사랑의실천1(한양나눔)	교양필수	2	2	0
		GEN5029	커리어개발 I :취.창업진로로드맵	교양필수	1	1	0
		PRE1018	사람.의료.사회1	전공기초(필수)	2	2	0
		GEN1016	일반생물학	전공기초(필수)	3	3	0
		GEN1014	일반물리학	전공핵심(필수)	3	3	0
		CHM1003	일반화학	전공핵심(필수)	3	3	0
	2학기	PRE1016	문화와비평	전공기초(필수)	2	2	0
		PRE1021	유기화학	전공기초(필수)	2	2	0
		PRE1022	의과학기초실습	전공기초(필수)	1	0	2
		PRE2013	의학용어학1	전공기초(필수)	2	2	0
		PRE1015	인간심리학	전공기초(필수)	2	2	0
		PRE1019	사람.의료.사회2	전공핵심(필수)	2	2	0
		BIO2022	세포생물학	전공핵심(필수)	3	3	0
		PRE1023	인체영양학개론	전공핵심(필수)	2	2	0
		DBC3011	생물리학	전공핵심(선택)	3	3	0
		PRE1017	의료기기의이해	전공핵심(선택)	2	2	0
		2학년	1학기	GEN6032	전문학술영어	교양필수	3
PRE2030	의과학기초연구			전공기초(필수)	1	0	2
PRE2027	사람.의료.사회3-1*			전공핵심(필수)	2	2	0
PRE2028	사람.의료.사회3-2*			전공핵심(필수)	2	2	0
GEN0036	통계학개론			전공핵심(필수)	3	2	2
PRE2020	행동의학			전공핵심(필수)	2	2	0
CHM4037	의약화학			전공핵심(선택)	2	2	0
PRE2016	의학용어학2			전공핵심(선택)	2	2	0
PRE2029	임상정보시스템과의료의미래			전공핵심(선택)	2	2	0
PRE2032	죽은자의이야기			전공핵심(선택)	2	2	0
2학기	SYH0002		글로벌리더십(HELP2)	교양필수	2	2	0
	PRE2031		사람.의료.사회4	전공핵심(필수)	2	2	0
	MED2010		유전학	전공핵심(필수)	3	3	0
	PRE2034		의학생리학입문	전공핵심(필수)	3	2	2
	PRE2033		의학생화학입문	전공핵심(필수)	3	3	0
	BNG3005		기초신경과학	전공핵심(선택)	2	2	2
	PRE2035		인간지능과인공지능의의학적이해	전공핵심(선택)	2	2	0
	PRE2036		인구집단과건강	전공핵심(선택)	2	2	0

* 사람.의료.사회3-1 과 사람.의료.사회3-2 중 1과목 필수 이수

03-3.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수업시간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09:30		일반물리학 (수업번호 13010)	일반화학 (수업번호 11750)	일반화학 (수업번호 13011)	일반물리학 (수업번호 11754)
09:30~10:00					
10:00~10:30					
10:30~11:00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수업번호 13011)	일반화학 (수업번호 11750)	일반물리학 (수업번호 13010)
11:00~11:30					
11:30~12:00					
12:00~12:30					
12:30~13:00					
13:00~13:30	일반생물학	말과글(3반 개설)	사람.의료.사회1		말과글
13:30~14:00					
14:00~14:30					
14:30~15:00	일반물리학 (수업번호 11754)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3반 개설)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17:30~18:00					

※교양필수 : [커리어개발I:취.창업진로로드맵] 수업은 10개반 개설됨.(수강신청 시스템에서 확인)

■ 이론 수업 강의실은 의과대학 계단강의동 302호에서 진행됨

- [말과글]

Team 강의/ 3개의 분반으로 진행

-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3개의 분반으로 진행

2015학년도부터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 : 오프라인 90분, 온라인 90분

- [일반화학, 일반물리학]은 2개의 분반으로 수업코드 확인 후 신청

일반화학 : 수09시,목10:30 / 수10:30,목09시 중 선택

일반물리학 : 월14:30,금09시 / 화09시,금10:30 중 선택

- [커리어개발 I:취.창업진로로드맵]

Blended 교육방식 - 커리어개발 I(오프라인)+사랑의실천1(한양나눔)(온라인) 연계

총 10개 반으로 운영, 한반 당 10-12명 내외의 소규모 수업/ 담당교강사별로 강의시간이 상이함

03-4.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기간: 2021.02.25(금) 11:00 - 24:00

개강 후 수강정정기간: 2021.03.08(월) 17:00 - 03.09(화) 24:00

2. 수강신청방법

- 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www.hanyang.ac.kr) 접속
- ② 한양대 홈페이지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WEB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
- ③ 학번, Password (최초 비밀번호는 주민번호13자리) 입력 후 수강신청
- ④ 의예과 과목과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게 핵심교양과목 파악 후 희망과목을 수강신청
의예과 1,2학년 동안 의예과 필수교과목 이외에 핵심교양(선택) 4학점 이상 이수
- ⑤ 사회봉사(핵심교양) 1학점 이상 필수

※ 유의사항

- ▶ 한 학기 최저 10학점에서 **최고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커리어개발(1학점), 사회봉사(1학점) 수강신청 시 최대 2학점 추가신청가능)
*신입생은 여름계절학기부터 사회봉사 수강신청 가능

3. 수강신청 전 확인 순서

- ① 의예과 수료요건 확인
- ② 2020-2023교육과정 확인 (*학기별 개설과목/이수구분 확인)
- ③ 1-1학기 수업시간표 확인 (*1학기 개설과목 모두 신청해야 함)

【신입생 영어기초학력평가 테스트 결과에 따른 수강신청】

1. 결과발표 : 2021.02.24.(수), 17시

2. 결과확인방법 : 메인 홈페이지 상단 한양포털HY-in > 로그인 > 신청 > 성적 > 특강/시험신청 및 조회 > 신입생 영어레벨테스트 '합격/통과여부'란 확인(합격여부 N 표시는 등급과 무관)

3. 평가결과에 따른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일시: 2021.02.25.(목), 11:00 ~ 23:59**

나. 수강신청과목

등급	신청과목	비고
A	-	1) 기초학술영어, 전문학술영어 수강면제 2) 교양선택 글로벌영역의 고급 의사소통 4과목 중 수강 권장 (※ 이공계를 위한 영어 글쓰기, 인문사회계를 위한 설득적 영어 글쓰기, 고급영어토론:설득의 기술, 고급영어토론:협상의 기술)
B	전문학술영어	1) 기초학술영어 수강면제 2)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전문학술영어 수강
C	기초학술영어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기초학술영어 수강 후 →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전문학술영어 수강 가능

※ 미 응시자는 C등급으로 자동 분류됨

※ 시험 면제대상자는 기초학술영어, 전문학술영어 수강이 제한됨

※ C등급 받은 학생은 반드시 1학년 2학기 때 "기초학술영어"를 이수하여야
2학년 때 "전문학술영어(교양필수)"를 수강할 수 있음.

※ 전문학술영어는 반드시 2학년 기간 중 수강해야 함

4. 공인영어성적 제출을 통해 기초학술영어 수강을 면제받을 수 있음.

가. 대상 : 입학 직후 응시한 신입생영어레벨테스트 결과 C등급을 받아 기초학술영어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 중 2021학년도 1학기까지 기초학술영어를 미수강한 자

나. 제출 서류

- 아래 공인영어성적 중 택1하여 원본 서류 제출(->창의융합교육원)
-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시험종류	점수	비고
TEPS(신)	271	
TEPS(구)	505	
TOEIC	630	
iBT TOEFL	36	Listening, Reading 두 영역만 합산한 점수
IELTS (Academic)	11	Listening, Reading 두 영역만 합산한 점수

※ 제출일정 및 서류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말 또는 6월 초)

※ 문의처 : 창의융합교육원 대학영어교육위원회 02-2220-2275

04. 기타 안내

04-1. 2021학년도 학사일정표

기		간		내	용
2021년 2월 24일 (수)					2021학년도 입학식
2월 25일 (목)					신·편입생 수강신청기간
3월 02일 (화)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3월 03일 (수)	~	3월 05일 (금)			조기졸업 신청기간
3월 08일 (월)	~	3월 09일 (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최종 정정기간
3월 30일 (화)	~	4월 13일 (화)			2021학년도 1학기 중간 강의평가 기간
4월 12일 (월)	~	4월 16일 (금)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졸업논문 제출기간
4월 20일 (화)					입대휴학자의 학기인정 기준일
5월 17일 (월)	~	5월 20일 (목)			2021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신청기간
5월 17일 (월)	~	5월 21일 (금)			다중·복수·연계·부전공 신청 및 포기기간
6월 01일 (화)	~	6월 30일 (수)			2021학년도 1학기 기말 강의평가 기간
6월 07일 (월)	~	6월 11일 (금)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접수기간
6월 14일 (월)	~	6월 30일 (수)			2021학년도 1학기 성적입력 및 열람기간 (이의신청 및 정정포함)
6월 21일 (월)					2021학년도 1학기 종강
6월 22일 (화)					보강가능일
6월 23일 (수)	~	7월 13일 (화)			2021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6월 23일 (수)	~	8월 31일 (화)			하계방학
7월 12일 (월)	~	7월 16일 (금)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7월 12일 (월)	~	7월 23일 (금)			2021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8월 02일 (월)	~	8월 04일 (수)			2020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8월 06일 (금)	~	8월 13일 (금)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
8월 18일 (수)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ERICA)
8월 19일 (목)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서울)
9월 01일 (수)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9월 01일 (수)	~	9월 03일 (금)			조기졸업 신청기간
9월 06일 (월)	~	9월 07일 (화)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최종 정정기간
9월 29일 (수)	~	10월 13일 (수)			2021학년도 2학기 중간 강의평가 기간
10월 11일 (월)	~	10월 15일 (금)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졸업논문 제출기간
10월 20일 (수)					입대휴학자의 학기인정 기준일
11월 08일 (월)	~	11월 12일 (금)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접수기간
11월 15일 (월)	~	11월 18일 (목)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신청기간
11월 15일 (월)	~	11월 19일 (금)			다중·복수·연계·부전공 신청 및 포기기간
12월 01일 (수)	~	12월 29일 (수)			2021학년도 2학기 기말 강의평가 기간
12월 13일 (월)	~	12월 29일 (수)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입력 및 열람기간 (이의신청 및 정정포함)
12월 21일 (화)					2021학년도 2학기 종강
12월 22일 (수)	~	2022년 1월 11일 (화)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12월 22일 (수)	~	2022년 2월 28일 (월)			동계방학
2022년 1월 10일 (월)	~	1월 14일 (금)			2021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1월 10일 (월)	~	1월 21일 (금)			2022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1월 19일 (수)	~	1월 21일 (금)			2022학년도 전과 접수기간
1월 25일 (화)					2022학년도 전과 면접
2월 03일 (목)	~	2월 07일 (월)			2021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2월 03일 (목)	~	2월 09일 (수)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월 16일 (수)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ERICA)
2월 17일 (목)	~	2월 18일 (금)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서울)
2월 22일 (화)					2022학년도 입학식
2월 24일 (목)					신·편입생 수강신청기간

04-2. 신입생 학생증 신청 안내

본교 학생증 신규발급은 신한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발행되며, 학생 본인의 신분확인과 도서관 이용 (출입, 대출, 열람좌석 배정), 생활관 출입, 건물 출입(공휴일 및 야간), 충전식 교통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다기능 학생증입니다. 2021학년도 학부 신입생은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생증 신규발급 예약등록 절차에 따라 학생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2021학년도 학부 신입생		
예약등록 신청기간	2021.02.23(화) ~ 2021.03.03(수)	발급비용	무료
예약등록 절차	<p>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www.hanyang.ac.kr 접속</p> <p>나. 홈페이지 [2021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 안내] 배너 클릭</p> <p>방법1)</p> <p>가. [2021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학생증 예약 등록 가이드 보기] 를 참고하여 인터넷 예약접수 신청</p> <p>나. 학생 본인이 신한은행 한양대지점을 직접 방문 하여 발급 신청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방문기간: 2021.02.23(화) ~ 2021.03.03(수) - 위치: 동문회관 3층 신한은행 한양대지점 - 방문내용 : 학생증 발급 서류 본인 실명확인 - 구비서류 : 학생본인 신분증 지참 <p>방법2)</p> <p>가. 신한은행 앱 SOL 설치 후 앱에서 등록(은행방문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등록 기간 : 2021.02.23(화) ~ 2021.03.03(수) * 신한은행 앱(SOL)에서 23일 이전에 신청할 시 예약 등록이 되지 않음 <p>다. 학생증 신규발급 예약등록 완료</p> <p>※ 외국인 학부 신(편)입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2021.03.09(화)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수령합니다.</p>		
학생증 수령	<p>가. 학생증 수령기간 : 2021.03.09(화) 배부 예정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세부일정 추후 공지 예정)</p> <p>나. 수령장소 : 각 단과대학 행정팀 사무실</p> <p>다. 구비서류 : 학생본인 신분증 지참</p>		
문의처	<p>가. 학생증 일반상담 : 학생지원팀 ☎02-2220-0085</p> <p>나. 인터넷 예약등록 및 방문상담 : 신한은행 한양대지점 ☎02-2281-0895(대표전화)</p> <p>다. 외국인 학생 영어상담 : 국제팀 ☎02-2220-2444(학부 신(편)입생), 2445(대학원 신입생), 2454~5(교환학생)</p>		

※ 학부 신입생 학생증 발급전 사진변경 안내

가. 사진변경 기간 : **2021.02.08(월) 09:00 ~ 02.18(목) 17:00 까지**

(※ 해당기간 이후 사진변경은 2021.2.18.이후부터 학생증재발급 사진변경으로 유료입니다.)

나. 사진변경 방법 : 학생본인이 입학처 홈페이지 방문 → 지원자통합서비스 클릭 →

로그인 후 왼쪽메뉴 중 **학생증 메뉴** 클릭 → **증명사진 업로드 후 저장**

다. 사진파일 용량 및 파일형식 : 30kb이하, JP(E)G 증명사진 파일

04-3.신입생 교과서 구입 안내

신입생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기초 필수과목의 교재는 교내서점(대학서적) 또는 기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자율적으로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가. '신입생 교과서'란? :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 사용할 기초필수과목 교재
(입학 후 개인별로 수강 신청할 교양과목 등의 교재는 '신입생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음)

나. 도서 상세 정보 (출판사명 : 한양대학교 출판부)

도서명	강의명	저자명	정가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1 (제6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21,000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2 (제6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21,000원
말이 힘이다	말과 글	한양대학교 교양국어교육위원회	18,000원
글이 삶이다	말과 글	한양대학교 교양국어교육위원회	18,000원

다. 구입처

- 오프라인 구입 (5% 할인) : 서울 캠퍼스 교내서점 (대학서적) / 02-2220-1851 / 학생회관(건물번호 107) 1층
- 온라인 구입 (할인 없음) :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 시중 서점 이용

라. 2021학년도 학과별 신입생 기초필수과목 교재 안내 (아래 URL 참조)

- <https://url.kr/NLBtE4>

04-4. 의과대학 홈페이지 안내

가. 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s://medix.hanyang.ac.kr/>

MEDIX는 의과대학 설립과 연혁, 학장님 말씀, 조직구성 및 교수소개, 각 교실의 설명이 수록되어 있는 **대학소개**를 위시하여 학사규정, 학사일정,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가 소개되어 있는 **학사정보**, 의과대학의 각종 연구소 및 센터, 부속기관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는 **교실.연구기관**, 학생회의 활동과 학교의 사진, 의대 동아리활동을 제공하는 **학생활동**, 게시판과 강의자료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나. 의학학술정보관 (백남학술정보관 통합) 홈페이지:<https://lib.hanyang.ac.kr/#/> ☎ 02-2220-1377

의과대학 본관 2층에 있으며,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를 돕기 위해 50,000여권의 장서와 1,100여종의 학술잡지 및 CD-ROM Title, VIDEO tape, SLIDE film등의 시청각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MEDLINE 검색은 물론 각종 의학 관련 해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CD-Networking System을 통하여 학내 어디에서든지 의학학술CD-ROM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보다 신속한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MLA)' 산하의 대학 및 병원도서관을 통해 팩스와 우편으로 원문 복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상호대차(ILL)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1. 신상의 변동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은 즉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으로 로그인하여 정정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2. 휴학은 1, 2학기 본부에서 지정한 기간에 HY-in에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학칙 세부내용은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 > 한양소개 > 한양대는 > 대학규정(학칙)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4. 각종 공지사항은 의과대학 홈페이지 및 학년 단체공지방에 공지됩니다.